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32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이원택·홍성국·김병주

주철현 · 최혜영 · 김남국

장철민 • 임호선 • 정청래

임오경 · 장경태 · 김민철

오영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조제 6호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"보험료"란 농어업인안전보	6
험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	
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	
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	
<u>지불</u> 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	지급
다.	
7. ~ 9. (생 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